
: 15-11-사무-09
수 신 : 언론사 법조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이유진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1.(화)
전송매수 : 총 10매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 장소 : 민변
-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 첨부자료 :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10대 위헌성<3쪽>
역대 헌법 '전문' 변천사<7쪽>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10대 위헌성

1. 위헌 대상

- (1) 2015. 11. 3.자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2)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2. 청구인 자격

- 학생(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 학부모
- 중,고등학교 역사, 국사 교과 교사
- 중고등학교 학교의 장
- 검정제 교과서 집필자, 출판사
- 일반시민 : 반대의견을 제출한 시민 등

3. 국정화 고시 등의 위헌성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침해

- 국정교과서 강행의 본질은 첫째, 국가가 모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해석독점), 나아가 둘째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국가가 독점한 단일한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임(사용강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여야 한다. ...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로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함. 자유, 자율,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
- 단 하나의 역사해석만을 강요하고, 그 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질식시켜 자유, 자율,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됨(헌법재판소)

(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위반

- 헌법 정신을 다시 명확히 표현한 것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선포한 헌법 제1조임.
- 대내적으로 한 국가의 가장 우월한 권력을 ‘주권’이라 하는데, 그 주권이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가중대사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원칙에 반하는 것임.

(3)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위반

-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교육자에 의하여 전담되거나 적어도 그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종교적 중과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결정).
- 대학 역사학 교수의 80% 이상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들 교육자와 교육전문가를 배제하고 집필진 구성

(4)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위반

-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특히 국가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역은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함(의회유보의원칙)
-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귀결로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제도에 대하여서도 법률주의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직접 정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서제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시 모든 것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국민과 의회는 관여할 수 없게 됨

(5)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재선택권’ 등을 침해함

-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 위와 같은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학생의 ‘교재선택권’ :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헌법재판소)
-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제6항 ‘교육제도법률주의’가 보장된 제대로 된 교육이어야 하고,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여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제사회는 2013년 유엔총회 권고,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베트남의 국정교과서 폐지) 등을 통하여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 형성함.

(6) 교사의 수업권, 인격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 교사의 수업권, 교재선택권 : 국정교과서로 인하여 “학교의 장은 국정교과서를 의무적으로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여야 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생의 경우에는 그 편찬된 내용대로 수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이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될 여지가 있다”(헌재 2006. 11. 14.자 2006헌마1200)

○ 교사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 침해(헌법 제19조) :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반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하나의 ‘의제된 진실’만을 강요하고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것

(7)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침해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중요한 기본권.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

(8) 집필자, 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 교과서 집필자의 학문의 자유 침해(헌법 제22조): 정부가 하나의 역사 해석만을 공인하는 것은, 자유로운 학문의 과정에 간섭하여 학문을 억압하는 것임.

○ 헌법 제21조 ‘검열금지원칙’ 침해 :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칠 역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권인 교육부가 특정한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고 하나의 견해만을 채택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견해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로써 검열에 해당

○ 언론의 자유 침해 : 국가에 의해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되지 않는 한 자신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을 교육의 내용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며,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여 온 출판사는 역사 교과서의 출판 자체를 할 수 없게 됨

(9) 국민의 청원권 침해, 적법절차원리 위반

○ 청원권(헌법 제26조):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예고 절차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였는데, 정부

가 이를 침해함(32만여 건의 국정화 반대의견 무시, 고지 미이행 등)

○ 모든 공권력행사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원칙’ 위배 : 행정예고기간 동안 정부의 일방적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 행위, 예비비 편성, 국정고시의 전제로 이미 확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최초 시행일을 2018년 3월 1일로 함)에 반하는 고시

(10) 헌법 전문 위반

○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

○ 각종 정부 홍보물과 인터뷰를 통하여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내용 드러남

역대 헌법 ‘전문’ 변천사

<p>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p> <p>전문</p> <p>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u>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u></p>
<p>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7.7.]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p> <p>전문 제헌헌법과 동일</p>
<p>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p> <p>전문 제헌헌법과 동일</p>
<p>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p> <p>전문</p> <p>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u>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u></p>
<p>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p> <p>전문 1963.12.17. 헌법과 동일</p>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인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